

간호대학 학사운영규칙

제 정	2011. 7. 27
1차 개정	2012. 6. 18
2차 개정	2012. 7. 24
3차 개정	2012. 8. 2
4차 개정	2012. 12. 31
5차 개정	2013. 2. 25
6차 개정	2014. 3. 27
7차 개정	2019. 9. 2
8차 개정	2024. 6. 7

제 1 조(목적)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 간호대학(이하 “간호대학” 이라 한다) 학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수업연한) 수업연한은 4년(8학기)으로 한다.

제 3 조(전 과) ① 전과라 함은 소속 대학내 타학과 또는 타대학의 학과로 소속을 변경함을 의미한다. <개정 2013.2.25>
 ② 전과는 제 2학년 1학기 이상 진급대상자에 한하며 매학년도 개시전에 실시하며, 재학기간중 1회에 한한다. <개정 2019.9.2>

제 4 조(휴 학) ① 휴학기간은 1회에 2개 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, 통산 4회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편입 학생은 편입학 이후 잔여 재학연한의 1/2을 초과하지 못한다.
 ② 입학 후 1학기 이상 이수하지 아니한 학생에 대해서는 휴학을 허가하지 않는다. 단, 종합 병원의 진단 결과 계속 4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과 군입대 휴학은 제외한다.

제 5 조(교육과정) ① 교육과정은 교양과목, 기초과목, 전공과목으로 구분한다.
 ② 교육과정의 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한다.

제 6 조(교육과정 이수원칙) ① 학생은 원칙적으로 입학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
 ② 학생은 필수로 지정된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
 ③ 전공필수에서 전공선택으로 학수구분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전공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학수구분이 변경된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
 ④ 전공필수 과목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전공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변경된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
 ⑤ 전공필수 과목이 폐지되고 대체과목이 지정된 경우 폐지 이전 전공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대체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
 ⑥ 4학년 실습과목과 논문지도 과목은 年단위 수업으로 진행한다.

⑦ <삭제 2019.9.2>

제 7 조(학기당 취득학점) ① 학점은 매학기 25학점까지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.(학사경고를 받은 자 포함)
② 계절학기의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은 6학점 이하로 한다.

제 8 조(편입학생의 교육과정 이수) 편입학생은 학과에서 권장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, 학과에서 특별히 지정하는 교과목이 있을 경우 이를 이수하여야 한다. 단, 학과 교육과정의 특성상 제 2학년 교육과정부터 이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2.25>

제 9 조(편입학생의 학점인정) 전 재적대학이나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과에서 인정하는 과목의 범위내로 한정한다. <개정 2013.2.25>

제 10 조(교직과정 이수신청)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 1학년 2학기 종료전까지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작성하여 간호대학장을 경유, 아주대학교 교무혁신처에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단, 이수 희망자는 1학년 1학기 중 교직과정 이수 희망신청서를 작성하여 교학팀으로 제출한다. <개정 2014.3.27, 2024.6.7.>

제 11 조 <삭제 2012. 6. 18>

제 12 조(출석) 매학기 각 과목별로 학기당 수업시간의 4분의 1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해당과목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않는다.

제 13 조(성적평가) ① 매 학기 과목별로 과목특성에 따라 평가방법 및 평가비율을 다양하게 적용하여 종합 평가하며, 이는 각 수업계획서에 명시한다.
② 성적은 A+, A0, B+, B0, C+, C0, D+, D0, F의 9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.
③ 4학년 과목 중 年단위 수업과목(실습과목과 논문지도과목)의 성적평가는 2학기에 실시한다.
④ <삭제 2019.9.2>

제 14 조(유 급) 해당학년 최종성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유급한다.

1. 학년 말 성적 평균평점이 2.0 미만인 자. <개정 2012. 8. 2>

제 15 조(재수강) 유급된 자는 해당학년에 이미 이수한 과목 중 “C+” 이하의 성적은 무효로 한다. 단, ” B0”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과목이라도 학과장이 따로 정하는 과목은 재수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2.25, 2014.3.27>

제 16 조 <삭제 2014. 3. 27>

제 17 조(졸업요건) 졸업요건은 다음과 같다.

1. 4년(8학기)이상을 등록한 자.
2. 12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.
3. 소정의 졸업논문 심사과정을 통과한 자.

제 18 조 (간호학 교육과정 진입요건) 3학년 교육과정 진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

1. 인간 이해와 돌봄 <개정 2019.9.2>
2. 심폐소생술

제 19 조 <삭제 2014. 3. 27>

제 20 조(준용) 본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아주대학교 「학칙」 및 「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」을 준용한다.

제 21 조(보칙) 본 규칙 시행에 따른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폐 지)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「간호대학 학사운영 시행세칙」은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12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12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1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13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1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9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제 18조의 교육과정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4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.